

공 유 재 산 관 리 변 경 계 획 안

(의안번호 제430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. 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8. 1 고 성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1997. 8. 4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9. 5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변경이유

- 고성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과 부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터미널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매각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부지 매각
 - 재산표시 : 고성읍 송학리 416-2번지 외 3필지 답 7,425㎡
 - 재산가액 : 1,482,175천원(공시지가 기준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키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경영수입 증대와 고성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변경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문 및 답변

○ 문 : 기채 10억을 어떻게 운용하는지

● 답 : 이율이 10.9%인 환매채에 예치되고 있으며, '96. 5 까지 이자수입은 1,200만원임

○ 문 :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투자 비용은 얼마이며, 매각방법과 투자비용보다 적게 매각예상시 대응방안은

● 답 : 총 투자비용은 15억3,300만원으로 그중 부지매입비 14억5,600만원, 부지조성비 3,700만원, 기타 4,000만원이며 매각방법은 감정 산술평균치 예정가에 의거 터미널 사업자에게 공개 공모입찰을 할 것이며
만약 투자비용보다 적게 매각예상시에는 집행부에서 직영할 계획이며
집행부에서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수익증대 방안으로 노력할 것이라 하였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'97. 9. 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